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생활보장과장
제출연월일	2015. . .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경리관"은 2014. 5. 28.(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개정으로 "재무관"으로 변경되었음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변경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회계관" 관한 규정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함
(안 제11조제3항)

나.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변경(안 제13조제2항제2호)

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를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로,

"심의·의결"을 "의결"로 변경(안 제13조제3항)

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로

"심의·의결"을 "의결"로 변경(안 제14조제3항)

마. "대하여"를 "대해서"로 변경(안 제15조제2항)

바.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변경(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 . ~ 2015. .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를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로, “심의·의결”을 “의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로, “심의·의결”을 “의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6조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기금의 회계관) ①·② (생 략)</p> <p>③ 「지방재정법」 중 <u>경리관</u>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 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11조(기금의 회계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재무관</u> ----- ----- -----.</p>
<p>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해당연도</u>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p> <p>3.·4.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u>기금운용계획</u> <u>서를 매 회계연도마다</u> 세입·세 <u>출예산서와</u> 함께 서울특별시 강 <u>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u> 한 <u>다)에</u> 제출하여 <u>심의·의결</u>을 받아야 한다.</p>	<p>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현 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해당 연도</u> ----- -----</p> <p>3.·4. (현행과 같음)</p> <p>③ ----- <u>기금운용계</u> <u>획안을 회계연도마다</u> 세입·세 <u>출예산안과</u> ----- ----- <u>의결</u>----- -----.</p>
<p>제14조(기금 결산) ①·② (생 략)</p>	<p>제14조(기금 결산) ①·② (현행 과 같음)</p>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
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
략)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
한을 2016년 12월 31일자로 하
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
---- 의결-----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
행과 같음)

② ----- 대해
서-----
-----.

제16조(존속기한) -----

인정할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생활보장과	
연 락 처	901-6672